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1월 5일 서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8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99. 12.23)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최 영 자)

가. 제안이유

-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과태료 부과대상(제2조) 관련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삭제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별표 관련

- 제1호 :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만원(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
- 제2호 :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과태료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 → 삭제
- 제3호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만원(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으로 개정
- 신 설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 100만원(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장 재 영)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99.2.5개정) 및 국민건강증진법(99.2.8개정)의 개정으로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99년 2.8일 개정전의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으나, 99년 2.8일 동법이 개정되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삭제되어 청소년 보호법(제51조, 제26조제1항)의 규율대상으로 하였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 전 강행규정에서 개정후 임의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였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신설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래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증액 개정되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년 10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과태료 부과대상(제2조) 관련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삭제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신설

나.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별표 관련

- 제1호 :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만원(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으로 개정
- 제2호 :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과태료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 → 삭제
- 제3호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50만원(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으로 개정
- 신 설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 100만원(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 100만원)

3.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817호 '99.2.5)
-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5,856호 '99.2.8)
- 입법예고('99.9.27~10.16) : 의견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한다.

나.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전에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 련 사 항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판매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때	법 제9조제2항	30	50	10 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제4항	30	50	10 0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제1항	30	50	10 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부과대상) (생략)</p> <p>1. (생략)</p> <p>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p> <p>3. (생략)</p> <p>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p> <p>(신설)</p>	<p>제2조(부과대상)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삭제)</p> <p>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p> <p>1. (생략)</p> <p>2. 개별기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반 내 용</th> <th rowspan="2">관련사 항</th> <th colspan="3">과 태 료</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1.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판매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때</td> <td>법 제9조 제2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2.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td> <td>법 제9조 제3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td> <td>법 제9조 제4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4.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td> <td>법 제12조 제2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신설)</td> <td>(신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body> </table>	위 반 내 용	관련사 항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판매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때	법 제9조 제2항	10	30	50	2.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 제3항	10	20	30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4항	10	30	50	4.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법 제12조 제2항	10	30	50	(신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p>(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개별기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반 내 용</th> <th rowspan="2">관련사항</th> <th colspan="3">과 태 료</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1.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삭제)</td> <td>(삭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r> <tr> <td>2. (현행3호와 같음)</td> <td>법 제9조 제4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삭제)</td> <td>(삭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r> <tr> <td>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td> <td>법 제28조 제1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위 반 내 용	관련사항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0	50	1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3호와 같음)	법 제9조 제4항	30	50	1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제1항	30	50	100
위 반 내 용			관련사 항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판매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때	법 제9조 제2항	10	30	50																																																															
2.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 제3항	10	20	30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4항	10	30	50																																																															
4.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법 제12조 제2항	10	30	50																																																															
(신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위 반 내 용	관련사항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0	50	1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3호와 같음)	법 제9조 제4항	30	50	1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제1항	30	50	100																																																															